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이 89년 3월29일자로 개정되면서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3백인 미만 사업장은 91년 9월30일까지 주 46시간으로 하고 90년 10월1일부터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백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법에 의해 오는 10월 1일부터 주 46시간을 44시간으로 단축 시행하게 됨에 따라 경제인단체에서는 1주일에 2시간분의 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과 노동력의 재생산, 고용증대 등의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회발전과 근로자의 대우개선의 정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ILO의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사실은 정부나 경제인단체에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의 노동시간이 점점 단축되어 가는 추

세이며 평균 노동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하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주에 5일근무제 40시간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가 상당수 있고 점차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것은 과거 주 48시간 6일근무제에서 주 40시간 5일제 근무를 시행해 본 결과, 보다 능률적이고 종업원의 사기와 의욕이 상승되었다는 공통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주 40시간 이내이며 서독은 평균 37시간이다. 서독정부의 분석평가에 의

터 주 35시간으로 단축시행하기로 되어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알아봅시다

노 90.8.24

근로시간 단축이유로 임금감액할 수 없어

하면 주 40시간 때보다 37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능률이 오르고 고용이 증대되었으며 구매력이 증대되어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에 기여가 되었다고 한다. 이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에 서 제일 큰 금속노련과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협약에서 93년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46시간에서 44시간 단축으로 2시간의 임금감액을 주장하는 사용자단체의 논리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니 단축된 시간만큼의 노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간 단축의 법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도 상당수의 기업체에서는 주 44시간

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임금감액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에서는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임금은 시간단축과 관계없이 계약된 기득권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 임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및 동법 제36조(임금지불) 제 109조(벌칙)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

김 말 룡 <노동문제상담소장>
문의.: 776-0468